모터바이크종합보험 보통약관

대인배상

1. (회사의 보상책임)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원동기장치자전거(총배기량 50cc미만을 말하며 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④ 핵 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약관7.(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험금중 200만원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②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③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④ 제②호 및 제③호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⑤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동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동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⑦ 제⑤호 및 제⑥호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써 약관 7.(지급보험금의 계산)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

대인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기명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⑤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

니합니다.

4.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 이하 같습니다)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5.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6.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②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중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미리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③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대인사고에 관한 절충이나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약관 5.(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된 비용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7.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8.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합니다.

5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보상금을 직접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손해보상청구서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④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6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손해보상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7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9.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손해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보험금청구서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④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3 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제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손해보상청구와 경합하는 때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손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0.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한도안에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약관8.(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지급)의 제5항 또는 약관9.(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의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가지급보험금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우선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탁금의 대부)

1 회사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합의대행을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액의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안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2 회사가 공탁금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대 물 배 상

12. (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1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약관18.(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험금중 50만원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합니다)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④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

⑤ 제②호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써 약관 18.(지급보험금의 계산)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14. (피보험자)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

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기명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⑤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16.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17.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②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미리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③ 약관 16.(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협력하는 데 소요된 비용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18. (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①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2 제1항에서 지급할 보험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제1항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합니다.

5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보상금을 직접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손해보상청구서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④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6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손해보상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보험금청구서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④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손해보상청구와 경합하는 때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손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1.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의 한도안에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약관 19.(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지급)의 제5항 또는 약관 20.(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의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가지급보험금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우선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 (공탁금의 대부)

1 회사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합의대행을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안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2 회사가 공탁금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23. (회사의 지급책임)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 싸움으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③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④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 때

⑤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피보험자가 상해

를 입은 때

⑦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⑧ 핵 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회사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용어풀이 >
> 이 약관에서 마약 또는 약물 등이란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5. (피보험자)

1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집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다만,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기명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⑤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⑥ 제①호 내지 제⑤호에 규정하는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제1항 각호의 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26.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1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

다.

① 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부상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3」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후유장해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별표4」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1'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가.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나.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ⅰ)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ⅱ)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라. 다만, '다' 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별표3」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운전석 또는 그 뒷좌석에 탑승중 인명보호장구(승차용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2'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5%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부상의 경우에는 상해구분 1급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7.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단서,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②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8.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 청구서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차대차 충돌위험)

29. (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타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용어풀이〉**
> 이 약관에서 타 차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합니다)로서 그 자동차와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30.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동차의 타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닌,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추락, 전복, 침수,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등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③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⑤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⑥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⑦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써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⑨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⑩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⑪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31. (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32. (손해액의 결정)

1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잔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니다.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피보험자동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수리업

소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 〈용어풀이〉
>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출고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사고 발생 당시의 해당경과기간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감가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출고한지 1년이내에 전부손해가 생긴 때에는 차량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3.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34. (보상한도)

1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가 매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 〈용어풀이〉
> 자기차량손해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3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의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정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6.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7. (보험계약의 종료)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일 때에는 보험계약은 사고발생시에 종료합니다.

38.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1 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39. (현물보상)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 반 사 항

40. (보험계약의 성립 및 책임기간)

1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분할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승락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락 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의 책임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책임기간

①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② 회사는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①호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41. (보험책임의 지역적 범위)

회사는 대한민국 안(북한지역을 포함)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42. (계약전 알릴의무)

1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회사가 제1항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회사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

③ 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때

④ 제1항의 위반사실이 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4 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제1항에 위반한 사실이 생겼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43. (계약후 알릴의무)

1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을 때
② 피보험자동차의 용도,구조변경 또는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③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물, 인화성 있는 위험물을 실을 때
④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실에 대하여 차액 보험료를 돌려 주거나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통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44.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린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반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판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려준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써 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때로부터 승인여부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전항 단서의 승인이 있는 후는 제외함)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5. (피보험자동차의 대체)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등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여 대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2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날로부터 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체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3 제1항에 의하여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면 그 시점부터 대체전 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46. (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보험료의 청구)

① 회사가 약관 42.(계약전 알릴의무)의 제④항, 약관 43.(계약후 알릴의무)의 제②항, 약관 44.(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제①항 또는 약관45.(피보험자동차의 대체)의 제① 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①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47. (피보험자동차의 관리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이들의 대리인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관리하는 자는 피보험자동차를 항상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정비하고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것을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8.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한 조사)

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 혹은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49.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50. (보험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사용폐지(피보험자동차의 대체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승계된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운행을 중지하였을 때

②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였을 때.

2 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 약관43.(계약후 알릴의무)의 제1항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이 약관46.(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보험료의 청구)의 규정에 의거 회사가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에 동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보험금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

3 제2항 제①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전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1. (보험료의 환급)

1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된 경우에는 회사가 무효의 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2 효력상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효력상실된 경우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효력상실된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사실을 안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3 해지

①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② 제①호 이외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2. (사고발생시의 의무)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곧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다음 사항을 회사에 서면으로 곧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발생의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다)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마)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③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미리 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걸려고 할 때, 또는 걸어온 때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곧 알려야 합니다.

⑤ 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곧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에 열거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하고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53. (보험금의 분담)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4.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

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 (대위)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자기신체사고를 제외하고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①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①항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의로 생긴 사고,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56.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57.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58.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 별표 1 >

차량가액 적용율

경과기간	출 고 6개월까지	6개월초과 1년까지	1년초과 1년 6개월까지	1년6개월초과 2년까지	2년초과
적용율	100.0%	70.0%	60.0%	50.0%	40.0%

< 별표 2 >

모터바이크종합보험 보험금지급기준

1. 대 인 배 상

가. 사 망

1. 장례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만원)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년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 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동 비율 적용

3.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기타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다) 기타유직자 :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란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년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 1〉에서 정한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3) 정년이 60세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잔여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마. 라이프닛쯔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frac{1}{1+i} + \frac{1}{(1+i)^2} +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 \frac{1}{(1+i)^n}$$

i=5/12%, n=취업가능월수

※ 대인배상의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0,000원으로 함.

나. 부 상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 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text{※ 산식 : 1일 수입감소액} \times \text{휴업일수} \times \frac{80}{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그에 소요된 실비를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기타손해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중 한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다. 후유장해

1.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및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 미만 60세 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원)

노동능력상실율 (%)	인정액
50미만～45이상	400
45미만～35이상	240
35미만～27이상	200
27미만～20이상	160
20미만～14이상	120
14미만～9이상	100
9미만～5이상	80
5미만～0초과	50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율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율×(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년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율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 실질적으로 부상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 사망의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표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연 령	취업가능월수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76세이상	12월

2. 대 물 배 상

1.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2.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3. 대차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 가능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4. 휴차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3. 과 실 상 계 등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그러나,

사망의 경우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표 2〉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표 2〉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 단,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 별표 3 >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보통약관 26조 ①항 ②호 관련)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600만원	1500만원
1급	600만원	1500만원
2급	500만원	800만원
3급	420만원	750만원
4급	360만원	700만원
5급	300만원	500만원
6급	260만원	400만원
7급	220만원	250만원
8급	180만원	180만원
9급	140만원	140만원
10급	120만원	120만원
11급	100만원	100만원
12급	60만원	60만원
13급	40만원	40만원
14급	20만원	2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 별표 4 >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보통약관 26조 ①항 ③호 관련)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900만원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8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700만원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600만원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500만원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4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300만원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240만원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180만원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140만원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60만원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40만원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모터바이크종합보험 특별약관

Ⅰ. 운전자연령 21세미만 부담보 특별약관

우리 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Ⅱ.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1. **(회사의 보상책임)**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총배기량 50cc미만을 말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차량을 전부 일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중도취득차량에 대한 자동담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 내의 차량을 보험기간 중도에 취득(대차계약에 의하여 6월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차량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이 보험계약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취득차량에 이미 체결된 유효한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중도취득차량으로 봅니다.

3. **(중도취득차량에 대한 책임기간)** 중도취득차량에 대한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중도 취득차량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4. **(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월분의 차량변동현황을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중도취득차량
   ②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에 가입된 차량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회사에 통지를 한 중도취득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한 때

5. **(차량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에 가입된 차량 또는 중도취득차량을 양도 한 때에는 보통약관 44.(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6. (적용배제)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 2.(중도취득차량에 대한 자동담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차량으로서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 내의 차량 전부를 이 보험에 부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차량.

② 중도취득차량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4.(차량변동현황의 통지)에서 정한 통지의 지체 또는 누락이 있었던 경우, 그 지체 또는 누락된 차량 및 그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차량.

7. (보험료의 정산)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4.(차량변동현황의 통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중도 취득차량 또는 양도, 폐차한 차량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일할계산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이때의 보험료는 서로 상쇄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보험료를 서로 상쇄하여도 보험계약자가 더 내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4.에서 정한 통지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하 "납입일"이라 합니다)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의 추가보험료를 납입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이후 중도취득차량에의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8. (특약의 해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 특별약관 6.(적용배제)의 제①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 특별약관 6.(적용배제)의 제②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 7.(보험료의 정산)의 제2항에서 정한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태만히 한 경우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Ⅲ.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② 제 ①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 ①항 및 제 ②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43.(계약후 알릴 의무) 제 ③항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 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3.(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Ⅳ.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회사의 보상책임)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신용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①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Ⅴ. 신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1. 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이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내용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형사합의지원금 : 피해자가 사망하여 형사합의를 하여 합의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사망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부상형사합의지원금 : 피보험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에 해당하는 사고 및 중상해사고(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어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부상형사합의지원금을 상해등급에 따라 다음의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 준	사망	1급	2~3급	4급	5~6급	7급
보상 한도액	3,0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다만, 부상형사합의금 수령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위 '①'과 '②'의 차액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③ 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약식기소 제외)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방어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 45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되는 경우 제외)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1.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2)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벌금지원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대한민국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의 '① 내지 ②'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ㄴ)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 명시)

(ㄷ)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ㄹ)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ㅁ)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②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③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④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⑤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⑥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⑦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⑧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 사고가 생긴 때
⑨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⑩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⑪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계약을 맺고 있을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⑫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4.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5. 대위 규정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6. 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부상 형사합의지원금금 및 벌금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53. 보험금의 분담'의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7.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 신벌금제외 추가 특별약관

1. 가입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특별약관 「신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신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2. 보상내용 (2)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④'의 '벌금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준용 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 19조(앞지르기 방법) 제 1항·제 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내지 제20조의 3(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 56조(갓길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

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 21조(철길건널목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 24조(보행자 보호)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 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 제 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 80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 41조(주취중 운전금지)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 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 12조(통행구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통행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 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3항의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 1항의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